

의안번호	제635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7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7월 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 근거 마련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불임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내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
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내용) ①·② (생략)	제5조(지원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도지사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내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</u> <u>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<u>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농촌체험휴양마을 유가증권 구입비 보조 등(조례안 제5조제3항)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5조(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 대상 지급 유가증권 구입 보조비 등
-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추 계 결 과 : 1,105,650천원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 50%, 시군비 50%
※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
세 출	1,105,650	122,850	245,700	245,700	245,700	245,700
유가증권 구입보조	1,105,650	122,850	245,700	245,700	245,700	245,700

6. 작성자 :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